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종합의견서

1. 일반 현황		서울시 도시기반 시설본부	공사명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수요기관	서울시 도시기반 시설본부	계약자	위풍산건설	낙찰율	67.965%			
계약방법	2등급 + PQ	담당자		전화:	FAX:			
기술부서				시공중인 공사 계약현황				
		총 공사 계약현황						
계약현황	계약일	2007년 10월 12일	계약금액	23,500,906,000원	계약일 (5차)	2017년 9월 19일	계약금액 (5차)	776,512,000원
	착공일	2007년 10월 17일	준공예정일	2019년 12월 31일	착공일 (5차)	2017년 9월 20일	준공예정일 (5차)	2018년 12월 5일
	조정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조정방법	지수조정율	지수조정율	지수조정율	지수조정율	지수조정율	지수조정율	지수조정율
	조정기준일	2008년 3월 31일	2008년 6월 30일	2008년 9월 29일	2010년 12월 31일	2014년 3월 10일	2017년 4월 4일	2018년 1월 1일
	조정율	3.08%	3.33%	5.50%	3.32%	3.23%	3.65%	3.45%
	조정금액	616,857,000	687,467,000원	1,173,268,000원	583,659,000원	574,762,000원	670,412,000원	683,456,000원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현황		직전조정기준일 (기준시점) :		2018년 1월 1일	
물가변동 조정율(A)	3.15 %	물가변동 경과기간	271일	계	약 체 결 일
				조정 기준일 (비교시점) :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B)	26,013,195,000원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공정율		예정공정율	36.30(%)
물가변동 적용 제외 계약금액(C)	9,464,540,783원	물가변동 적용대기 (B - C = D)		실행공정율	35.99(%)
선금금 공제금액(F) (D×A×E=F)	5,028,000원	물가변동 동력대상 조정금액(G) (A×D = G)			521,282,000원
경유세 공제금액 [H]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G - F - H)			516,254,000원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첨부서류		첨부 서류명	부 수	비 고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역 총괄표(프로그램 데이터 포함)			붙임 2 참조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프로그램 데이터 포함)			붙임 3 ~ 10 참조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참고자료			붙임 11 참조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종합의견

1. 위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첨부자료의 프로그램 내용은 입찰당시(직전 물가변동조정당시)의 물가변동 기초자료의 내용과 부합됨을 확인하였으며, 물가 변동 자료의 오류, 번조, 위조, 불일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서울시 도시기반 시설본부에서 책임을 질 것이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와 계약예규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검토한 바 3.15%이상 상승(하락)하였으며,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도 90일 이상 경과한 것을 확인하고 귀청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8년 11월

서울시 도시기반 시설본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인)